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금)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강수진의원 외 21명 발의 (의안번호 383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4. 11. 2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수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함
(안 제5조~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안 제8조~제10조)

-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2조)
-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13조)
-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회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 중 4개 구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6조~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괴롭힘 금지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상담, 예방 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신고접수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이상 두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제10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서는 신고자 등이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주의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하고,
 - 안 제13조(비밀유지)에서는 피해자 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괴롭힘 재발 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였음
 - 이와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 1. 12.)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며,
 -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을 초래하며, 극단적인경우 비극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내 신뢰 및 업무 효율 저하 등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저해함.
- 더욱이 공무원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갑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지가 크며, 우리 구의회는 작은 조직구성과 더불어 인사이드가 협소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 예방이 더욱 필요할 것인바,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및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 *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3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안 제8조~제10조)

마.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2조)

바.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상담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괴롭힘 사건을 상담 또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상담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의장은 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금)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오중균의원 외 18명 발의 (의안번호 385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4. 11. 2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중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며, 장기재직휴가 확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정비
- 공무원의 사생활보장 신설(안 제13조)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7조제4항)
- 생일특별휴가 신설(안 제17조제6항)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본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4. 7. 2.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규정한 본 조항을 정비하고,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및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3조(사생활보장)에서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사생활 보장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와 9개 구의회 복무 조례에 사생활보장(휴식권 등 보장)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17조 1항 별표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등 경조사 휴가를 장례참석기간 등 현실성을 반영하여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안 제17조의(특별휴가)4항에서는 특별휴가를 재직기간별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최근에 발생 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특히, 의회 직원의 일의 업무능률을 위하여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범위를 확대 하였음.
- 안 제17조(특별휴가) 6항 에서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의회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또한 성북구도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제16 (특별휴가) 안건 으로 제출함.
- 안제 17조제8항에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대상 아동의 연령을 완화하는 경조사휴가를 확대하였으며,
- 기타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고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불 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또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관계법령

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삭제 <2022.6.2.>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삭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삭제 <2022.6.2.>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성북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성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성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개정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삭제<2020.4.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개정(2020.4.7., 2022.6.2.)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제3항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5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며, 장기재직휴가 확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정비
- 나. 공무원의 사생활보장 신설(안 제13조)
- 다.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7조제4항)
- 라. 생일특별휴가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

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
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정계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로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금)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소형준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384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4. 11. 28.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임용(안 제1조 ~ 제3조)
- 정책지원관 배치 등(안 제4조)
- 근무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 ~ 제7조)
- 근무실적평가, 비밀엄수 의무(안 제8조 ~ 제9조)
-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안 제10조 ~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²⁾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1)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자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정책지원관의 정의, 정책지원관의 최초 임용시 직급을 규정하고 그 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하고, 이 배치과정에서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를 고려하고, 또한 의원이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임.
- 안 제6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안 제7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등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를 할 때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기준을 통해 지휘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신상정보 및 정책수립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정책지원관의 배치나 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용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4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
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
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임용(안 제1조~제3조)

나. 정책지원관 배치 등(안 제4조)

다. 근무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제7조)

라. 근무실적평가, 비밀엄수 의무(안 제8조~제9조)

마.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에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 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3.(금)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7. 소형준의원 외 8명 발의 (의안번호 384호)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4. 11. 28.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62조의2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의2 ³⁾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4. 11. 8.~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본 폐지 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개정 2023. 3. 21. 시행 2023. 9. 22)되고 이에 따라 우리구의회도 교섭단체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정 2024. 10. 31.)
- 그동안 우리구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교섭단체를 공식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 규칙 제정 당시에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고 교섭단체의 성격상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에 관한 명시적 근거 및 위임 조항이 마련되어 조례로 제정하였기에 기존 의회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검토됨.

3)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9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7일

발의자 :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정병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2조의2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2조의2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4. 11. 8.~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